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의 논리와 방향

송기참 |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1. 서언

1963년 사립학교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래 우리 나라 사립학교는 자주성을 향유하기 보다는 공공성을 강요 당해 왔다. 의무교육 대상학교인 사립 초등학교는 극도로 위축되어 몇 개의 학교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사립 중학교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정책으로, 고등학교는 평준화 정책으로 학생 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을 박탈 당한 채 준공립화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립대학교도 예외가 아니어서 각종 규제와 간섭 속에 정체성이 혼미한 상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사립학교 통제의 논리는 교육의 공공성이었다. 교육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사립대학 통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등록금 책정권', 다른 하나는 '정원 책정권'이다. 등록금 책정권을 통한 통제는 사립대학 재정난을 계속 방치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자 1989년부터 해제되었으나, 정원 책정권을 통한 통제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사립 중등학교에 대한 통제가 한계에 이르자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통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중학교는 1971년부터, 고등학교는 1979년부터 재정결합보조를

시작하여 현재는 대부분의 사립 중등학교가 재정결합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사립대학에 대한 통제는 재정지원을 병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중등학교에 대한 통제와는 다르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자 정부는 사립대학에 대한 등록금 통제를 포기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제 사립대학의 정원 확보를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면 또 다시 정원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함으로써 정부는 책임을 면하려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사립대학 통제의 논리인 공공성은 사립대학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적용해왔으며, 정부 당국에서는 사립대학 교육의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립 중등학교에 대한 통제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사립대학은 정부의 통제로부터 일부 벗어났으나, 이제는 자생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립대학의 교육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등록금을 몇 배로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사학법인이 전입금을 대폭 내놓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학 문을 열기만 하면 서로 들어오겠다고 이우성치던 시절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정원을 다 채우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토록 갈망했던 자율이지만 이제는 생존이 막막한 사립대학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제 문닫는 대학도 나와야 한다'며 평가라는 새로운 정책수단을 휘두르며 사립대학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느긋하게 방관하고 있다. 과연 정부는 사립대학 부실에 책임이 없는 것인지, 또 사립대학 재정은 학교 설립자와 학생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정부가 사립대학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사립대학 재정 실태에 근거한 현실론적 입장과 사립대학 설립·인가권과 지도·감독권을 행사해 온 정부의 책임론적 입장, 사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본 당위론적 입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2.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의 논리

1) 사립대학의 현실론

정부가 사립대학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해야 하는 근거

는 현실적으로 국고지원을 늘리는 길 외에는 사립대학의 재정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데 있다. 사립대학의 세입원은 크게 보면 학생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학교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고지원금, 그리고 기부금 등 4가지이다. 다음 <표 1>은 1998학년도 사립대학 재정결산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1998년 결산 기준으로 사립대학 운영수입의 등록금 의존도는 68.9%로 매우 높은 상태이다.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해 왔다. 199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0% 이상씩 등록금을 인상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렀다. 앞으로 물가지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록금 인상을 통해 현재 보다 사립대학들의 경영여건이 나아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1998년에는 IMF라는 복병을 만나 등록금을 동결할

<표 1> 1998년도 사립대학 재정구조(결산 기준)

수입	금액 (억 원)	비율(%)		수입	금액 (억 원)	비율(%)		
		전체	운영수입			전체	운영수입	
운영수입	등록금	41,921	61.8	68.9	보수	23,347	34.4	55.8
	전입금	5,433	8.0	8.9	관리운영비	5,739	8.5	13.7
	기부금	5,207	7.7	8.6	연구비	4,715	6.9	11.3
	국고보조금	2,377	3.5	3.9	학생경비	7,120	10.5	17.0
	교육부대수입	1,412	2.1	2.3	교육외비용	539	0.8	1.3
	교육외수입	4,489	6.6	7.4	전출금	357	0.5	0.9
	계	60,838	89.6	100	계	41,819	61.6	100
자본 및 부채수입		3,041	4.5	자본 및 부채비율		20,952	30.9	
전기 이원자금		3,996	5.9	차기 이원자금		5,104	7.5	
계		67,875	100	계		67,875	100	

*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표 2> 대학의 연도별 납입금 인상률

(단위: %)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국립평균	3.2	7.5	9.6	11.5	11.5	11.2	11.3	5.0	0.8	1.3
사립평균	11.8	15.5	15.5	16.2	13.5	14.6	13.7	6.7	0.5	0.1
소비자물가지수	8.6	9.3	6.5	4.8	6.2	4.7	4.5	4.5	8.0	1.0

*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표 3〉 사립대학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 현황(1999. 3. 1)

(단위: 억원)

기준적용	기준(A)	확보(B)	확보율(B/A, %)	과부족(B-A)
대학설립·운영규정	55,815	27,114	48.6	△28,701
학교경영재산기준령	4,499	27,114	602.7	22,615

※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표 4〉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 재산의 구성(1999. 3. 1)

구 분	토 지	임 야	건 물	주 식	정기예금	기 타	계
평가액(백만원)	1,233,311	451,870	409,843	152,917	436,396	27,069	2,711,406
구성비(%)	45.5	16.7	15.1	5.6	16.1	1.0	100.0

※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수밖에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휴학생이 늘어나면서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등록금 인상 과정에서 학생회와의 마찰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필요에 따라 등록금을 무작정 올리기도 어렵다. 학생 인구의 감소로 대학 지원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2003학년도 이후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 학생 등록금을 통해 사립대학 재정을 확충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세입원이 학교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이지만, 이것도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수익용 기본 재산의 확보율이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수익용 기본 재산의 확보율이 저조한 것은 1996년 8월까지 적용되었던 학교법인의 학교경영 재산 기준령 상의 기준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학교설립·인가를 염격히 통제하면서도 일단 설립을 인가한 후에는 증원과 수익용 기본 재산을 연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6년 8월 이후에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하면서 세로이 제정한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는 수익용 기본 재산의 확보 기준을 상향 조정했지만 이미 설립된 대학에 대하여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다음 〈표 3〉은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 현황을 나타낸다. 학교경영 재산기준령을 적용할 경우 수익용 기본 재산의 확보율이 600%나 되지만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적용할 경우 50%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수익용 기본 재산의 확보율도 문제지만 확보된 수익용 기본 재산의 수익성에도 문제가 있다. 수익용 기본 재산의 상당 부분이 수익성이 매우 낮은 토지, 임야 등의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4〉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 재산에서 토지와 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62.2%에 이른다. 이는 현실적으로 학교법인 전입금을 통해 사립대학 재정문제의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근본적인 무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사립대학들은 동문, 학부모, 기업, 독자가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확보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해왔다. 대학마다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총장들은 동분서주 헤야만 했다. 또한 산학협동, 연구수탁사업,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수익 증대 노력도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기부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부금으로 사립대학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기여입학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간헐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기부금과 입학을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한 국민정서는 부정적이다. 등록금을 통한 재정 확충이 한계에 와 있고, 법인 전입금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기부금 확보가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 사립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최후의 방법은 국고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

2) 정부의 책임론

사립대학 국고지원의 논리로 정부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학생 및 학부모이다. 정부의 책임론은 사립대학 설립·인가권을 행사해 온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사립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폭발적인 국민의 교육 수요를 국가 재정만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사립대학을 인가하여 교육 수요를 흡수하도록 한 것은 불가피했던 조치로 이해된다. 그러나 사립대학을 설립·인가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했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못했다면 사립대학의 부실에 대하여 정부도 일단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공신력을 믿고 특정 사립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그 학교가 부실하다면 인가해준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정부가 대학설립·인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1996년까지 적용된 학교법인의 학교경영 재산기준령과 동 시행규칙에 의하면, 대학법인이 갖추어야 할 수익용 기본 재산의 최소 기준은 학생당 20만 원에 불과했다. 사립대학 부실의 상당 부분은 정부가 수익용 기본 재산의 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적용한 데 기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설립·인가 당시에 기준을 낮게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설립 후 학교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또는 정원을 늘려주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익용 기본 재산의 확보를 실효성 있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정부가 지도·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1976년에 제정한 학교법인의 경영재산 기준령 시행규칙을 10년 후인 1987년에 개정하여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 기준을 바꾸었고, 1996년 대학설립운영 규정으로 대체될 때까지도 기준을 조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도 정부의 지도·감독 기능에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가 된다.

요컨대 정부는 설립·인가과정에는 깊이 관여했으나 일단 설립·인가된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립대학의 부실에 대하여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사립대학 부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방법은 부실 대학을 폐쇄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고 지원을 확대하여서라도 부실을 해소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3) 법적 역할론적 당위론

① 사립학교 지원의 법적 근거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로 드는 법 조항은 사립학교법 제 43조와 제 44조이다. 사립학교법 제 43조 제 1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 44조에서는 실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우선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의 지원 근거는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로 표현되어 있어서 지원 여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7년말 제정된 교육기본법 제 2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학에 대한 지원·육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제 43조보다는 한층 발전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을 위한 재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는 여전히 국가의 재량 사항에 속한다. 비록 재정지원을 위한 재원과 지원 규모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적

어도 정부가 사립학교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사학교육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② 사립학교의 역할론

사립학교를 단지 공학의 보조 수단으로 인식한다면 국가의 보조는 필요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학이 공학과 대등한 지위에서 공학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국민의 교육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국가의 보조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지원이라기 보다는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지원이며, 국민의 교육권 보호 차원의 지원이다.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똑 같은 국민이므로 국가는 그들을 교육할 당연한 의무를 져야 하며, 그들은 국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의 역할과 관련한 국고지원의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공·사립 학교가 다같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의 공기(公器)이고, 동등한 자격을 갖는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국가 사회에 배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즉, 사립학교의 지위는 법적으로 국·공립학교와 하등 차이가 없는 공공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대한 공공보조는 국·공립학교에 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립학교도 우리 나라 교육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 2조의 정신을 구현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교의 설치자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4분의 3을 초과하는 부분을 사학이 차지하고 있어 그 역할의 국가·사회적 중요성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립학교가 차

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사립대학 교육의 질이 바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을 대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학의 질 저하는 바로 교육의 질 저하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사학은 국민 교육의 궁극적 책임을 갖는 정부에 의해 국가의 재정적 책임 아래에서 운영되도록 힘이 타당하다. 교육과 국가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향후 사학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넷째,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서도 재정 상태가 열악한 사학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립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감독이 학교의 설치, 교육과정, 시설, 학생정원 등 다양한 범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들이 공공성을 갖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정부의 공공성 보장을 위한 통제 감독은 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할 때 의미가 있고 설득력이 있다. 한편, 교육의 수익과 관련해 볼 때도 정부가 사립학교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다. 교육은 사적 수익 외에도 사회적 수익이 있다는 점이다. 교육이 사회적 수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국·공·사립에 관계 없이 교육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3.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의 방향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타당하고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직접 보조할 것이냐 아니면 교육기관에게 지원할 것이냐의 문제, 사학의 운영비에 지원할 것인지 시설비에 지원할 것인지의 문제 등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사학의 자주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중대는 필연적으로 정부 통제의 확대를 수반한다는 갈등도 있다. 사학재단의 편에서 보면 지원은 하되 간섭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 하겠지만, 국가 예산집행의 책무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통제가 증대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립대학 교수 봉급이 국·공립대학 교수 봉급보다 높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다양한 사립대학이 있으니 그러한 대학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수 봉급이 국·공립대학 보다 낮은 사립대학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봉급 수준이 문제가 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 봉급이 높은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일부 학교법인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사학 비리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국고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극히 일부 법인이 문제가 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지원 회피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일부 자격 없는 법인을 제외하고 지원하면 될 것이다.

이제는 국가가 사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자 역할에서 탈피하여 지원·육성자로서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사립대학이 독자적인 판단과 노력으로 생존해야 한다면, 대학을 믿고 묵묵히 뒤에서 조건 없는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립대학에 대하여 조건 없는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특수목적 지원사업 보다는 일반 지원사업을 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다.

과거 국가재정이 어려울 때 사립대학들은 국가를 도와서 국가 교육 책임의 상당 부분을 분담하여 국민 교육을 담당하여 왔다. 이제 국가는 사립대학에 대하여 빚을 갚을 때가 되었다. 정부가 어려운 사립대학을 도와 대학을 살리고, 교육을 살려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다하는 기회일 뿐이다. 사립대학이 무너지면 그 만큼 국가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현재 사립대학에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 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예산의 총량 규모를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사립대학의 운영 수입 중 국고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3.5%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는 먼저 재원조달 방법과 지원 규모에 대하여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사립대학 지원·육성법(가칭)'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재원의 조달 방법과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을 규정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일반 예산으로 확보하여 사업별로 사립대학에 지원할 경우 안정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 사업별 재정지원을 가지고는 편중 지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대학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건 없는 지원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립대학 지원 예산을 법정 교부금, 또는 고등교육세 형식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단 교부금이나 교육세가 확보되면, 대학에 대해서도 표준 교육비 개념을 도입하여 계열별 교육비 차이도를 적용한 가중 학생 수를 기준으로 기준 재정 수요액을 산출하고, 기준 재정 수입액과의 차액의 일정률(예컨대 50%)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사립대학 경상비의 50%까지 보조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사립대학 경상비의 80%, 자본적 경비의 90%를 보조하고 있다.

한편 사학관련 조세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사립대학들이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저수익성 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수익용 기본 재산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비과세하여 학교법인의 재산 증식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또한, 부속병원 의료장비에 대한 수입 관세의 감면율(50%)을 학교 교육용 실험설습기자재 감면율 수준인 90%로 상향 조정하여 부속병원의 기자재 확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법인에 대한 개인 기부금의 공제 한도액을 폐지함으로써 사학에 대한 기부를 촉진해야 한다. ■

(참고문헌)

교육부 대학재정과(2000.4), "대학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평가

- 개선 및 2000년 추진계획”
- 권태신(1995), “교육재정 확충과 대학재정 지원 방향”, 「대학지성」, 가을·겨울호.
- 김남순(1992.9), “사립대학 재정지원 실태와 개선 방안”, 「교육재정 경제연구」, 창간호.
- 김두식(1996),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기본 방향과 내용”, 「대학교육」, 제84호.
- 김병주(1996),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보조는 확대되어야 한다”, 「대학교육」, 제84호.
- 김운태(1992.9), “사학에 대한 정부지원의 당위성”, 「교육재정경제 연구」, 창간호.
- 김재규(1999), “공교육비와 기회균등”, 「대학교육」, 제97호.
- 김채옥(1999), “사립대학 입장에서 본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과 배분 정책”, 「대학교육」, 제97호.
- 김화진(1999),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과 배분의 정책 방향”, 「대학교육」, 제97호.
- 나민주(1998), “대학재정 지원정책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 박부권 외(1998.6), “대학평가에 의한 재정지원 제도 개선 연구”
- 송광용 외(1998), “대학재정 국고지원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 송기창(1996), “교육재정 GNP 5%와 대학재정 확충”, 「대학교육」, 제84호.
- 송기창(1998.5), “국가의 사립대 지원책도 병행돼야”, 「새교육」, 제523호.
- 송기창(2000.4), “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 대학재정 운영의 효율화와 인정적 재원 확보 방안 모색,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27차 학술대회 논문집.
- 윤건영(1992.9), “사학관련 조세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교육재정경제연구」, 제4권 제2호.
- 윤정일(2000), 「교육재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세영사.
- 윤정일 외(1996), 「한국 교육정책의 텁구」, 교육과학사.
- 이만형(1996), “사립대학 재정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대학교육」, 제84호.
- 이면영(1999), “일본의 대학재정 정책을 통해 본 한국 사학재정 지원 발전 방향”, 「대학교육」, 제97호.
- 이화국 외(1999.12),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학평가지표의 체계화 및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 임연기 외(1999),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조석훈(1999), “영국의 대학재정 지원과 배분정책”, 「대학교육」, 제97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98), 「대학교육발전지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송기창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전문위원, 인제대 교육대학원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교육재정정책론」, 「한국교육정책의 텁구」, 「교육행정학원론」 등이 있다.